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

1.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출입, 검사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해 실시하도록 하고자, 「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개정고시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121-92호, 2021.11.16)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우리처 누리집(<http://www.mfds.go.kr> > 법령·자료 >제개정 고시 또는 고시전문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「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
 2. 「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고시전문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식약처 본부,평가원 및 지방청, 보건복지위원장, 관련 협회 및 단체



주무관 김현수 바이오의약품 전결 2021.11.16.
정책과장 김춘래

협조자

시행 바이오의약품정책과-5420 (2021. 11. 16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 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3304 팩스번호 043-719-3300 / goldhans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